

서울특별시서초구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47호)

◦ '98. 4. 13.

◦ 총무재무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4. 1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8. 4. 9

다. 위원회 상정일자 : '98. 4. 13

라. 위원회개회 회수 및 일수 : 제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신종식)

가. 제안이유

◦ 공중위생법시행령('96.6.29 대통령령 제15091호) 및 동법시행규칙 ('96.8.20 보건복지부령 제32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징수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 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되어 있어 1994. 1. 11. 조례 제236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폐지

- 경과조치 : 본 개정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 조례 적용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

가. 검토내용 : 생략(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 공중위생법 제43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려면 세부적인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제43조는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적용할 수 없어
- 서초구에서는 '94.1.11 조례 제236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 '95. 12. 29 공중위생법 제43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96. 6. 29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96. 8. 20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 과태료 징수의 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초구 조례는 폐지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공중위생법시행령이 '96. 6.29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이 '96. 8.20 개정되었는데 본 조례의 폐지가 늦어진 이유와 조례가 폐지되면 과태료는 어떤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는가 ?
→ 상위법규가 '96년에 개정되어 그 동안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 왔으며, 이번 조례의 제출동기는 조례 일제 정비에 즈음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조례정비의 시기가 늦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개선톡 하겠음.

그리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토록 되어 있어 본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가 가능하므로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임.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체계자구 정리내용 : 없 음